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제명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2호, 2022.5.25.)

2. 개정 사유

-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된 규정을 고시로 통합·일원화

현행	내용	개정후
<종전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법령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내용 (표시방법, 제재조치)	<통합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종전훈령> 「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권한 행사를 지시하는 내용 (조사방법, 제재조치)	<폐지>
<종전지침>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세부적인 업무절차 및 제재조치표 등 (업무분장, 제재조치)	<폐지>

- 원산지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국내생산물품 관련 내용 추가)

□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률 확대, 현지시정 허용사유 추가,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크기 통일, 의견제출기간 연장 등)

- 수요자 편의를 위한 용어·서식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유사 조문 통합(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고시, 훈령, 지침에 각각 혼재된 유사한 조문을 고시로 통합*

*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조치사항이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고시로 통합

※ 세부적인 통합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 보세구역반입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32조, 별지13, 별지14)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조문	종전고시 15조 + 종전훈령 19조	개정고시 32조	조문통합
서식	종전고시 별지10 + 종전훈령 서식9	개정고시 별지13	서식통합
	종전훈령 서식8	개정고시 별지14	훈령⇒고시 이동

※ [종전고시15조] 수입통관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처리 + [종전훈령19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 [개정고시32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종전고시별지10]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 [종전훈령 서식9]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 [개정고시별지13]
 [종전훈령서식8]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 ⇒ [개정고시별지14]

- 시정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2조, 제33조, 별지6, 별지7)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조문	제재지침 2조2호	개정고시 2조14호	지침⇒고시 이동
	종전고시 16조①~⑤	개정고시 33조①~⑤	준치, 문구수정
	종전훈령 20조①~④	개정고시 33조⑥~⑨	훈령⇒고시 이동
서식	종전고시 별지4	개정고시 별지15	별지 위치 이동
	종전훈령 서식10	개정고시 별지16	훈령⇒고시 이동

※ [제재지침2조2호] ⇒ [개정고시2조14호] '시정명령' 용어의 정의
 [종전고시16조①~⑤] ⇒ [개정고시33조①~⑤] 시정명령(수입물품용)
 [종전훈령20조①~④] ⇒ [개정고시33조⑥~⑨] 시정명령(국내유통물품용)
 [종전고시 별지4] ⇒ [개정고시별지15]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
 [종전훈령 서식10] ⇒ [개정고시별지16]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물품용)

○ 과징금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36조)

- 과징금부과기준을 물품별로 구분하여, 공산품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시행령을 인용하여 [별표13]으로 통합
- 과징금부과절차 관련된 종전고시 19조·19조의2, 종전훈령 22조~24조, 제재지침 9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36조③~⑧항)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조문	종전고시19조·19조의2 + 종전훈령22조·23조·24조 + 제재지침9조	개정고시 36조 (과징금부과절차)	조문통합 훈령,지침⇒고시
서식	종전훈령 별표2 + 제재지침 별표1·별표2 + 대외무역법시행령 별표2 + 원산지표시법시행령 별표1의2	개정고시 별표13 (과징금부과기준)	별표통합 훈령,지침⇒고시

○ 과태료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37조)

- 과태료부과 관련 종전고시 19조의2·20조의2, 종전훈령 25조~28조, 제재지침 11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제37조)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조문	종전고시19조의2·20조의2 + 종전훈령25·26·27·28조 + 제재지침11조	개정고시 37조 (과태료부과절차)	조문통합 훈령,지침⇒고시
서식	종전훈령 별표2 + 제재지침 별표3 + 대외무역법시행령 별표4 + 원산지표시법시행령 별표2	개정고시 별표14 (과태료부과기준)	별표통합 훈령,지침⇒고시

○ 고시, 훈령, 지침에 산재된 교육명령 규정을 개정고시에 통합(제38조)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명령 관련 종전고시 19조의3, 종전훈령 28조의3, 제재지침 12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제38조)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조문	종전고시19조의3 + 종전훈령28조의3 + 제재지침12조	개정고시 38조 (위반자교육규정)	조문통합 훈령,지침⇒고시
서식	종전훈령 서식24호 제재지침 별지9호	개정고시 별지27 (교육이수명령서)	별지통합 훈령,지침⇒고시

※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 조문 구분 체계 조정

- 조문의 수에 비해 구분 단위가 많고 체계가 비효율적이므로, 장(章) 구분은 존치하고 절(節) 구분은 삭제
- ※ 1장, 2장 1절 · 2절 · 3절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 조문 및 별지 서식 재배열(제10조 등)

-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조문배치 순서를 조정하고, 해당 조문 관련 별표 · 별지 서식 순서 조정

【조문 · 서식의 순서 조정 예시】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조문	종전고시17조의2	개정고시 10조 (원산지증명서 제출)	조문 순서 조정
서식	종전고시 별지13호	개정고시 별지1 (원산지증명서 양식)	서식 순서 조정

※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 원산지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국내생산물품 추가) (2 · 13 · 23조)

-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정의 추가(제2조제12호)
- ※ 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인용

- ‘국내생산물품’ 용어의 정의 신설(제2조제13호)
 - ※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등) 인용
- 조사대상* 확대, 조사수행** 방식 구체화(15조, 19조)
 - * (대상) 조사대상에 수출입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 추가(15조제1호),
조사장소에 수출입업자 사업장 외에 국내생산자 사업장 추가(19조①항)
 - ** (방식) 생산품목 및 생산시설 확인 추가(23조①항), 방문조사는 주
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 서면조사는 자료받아
세관사무실에서 조사(23조⑥항)
- 정보범위확대(‘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증빙자료’) (2조10호, 31조2항)
 -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의2) 개정으로 ‘서류’ ⇨ ‘자료’로 용어 변경
되었으며, ‘자료’는 서류, 전산 등 모든 형태의 매체를 포함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크기 명확화(제3조)

- 농수산물은 표시면적에 따라 크기(8·12·20포인트)를 규정하고, 그
가공품은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표시크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
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3]의 기준과 맞춤

원산지표시상태 입력 규정 흡수 통합(제12조)

- 통관부서의 수입검사과정에서 원산지표시상태 이미지 촬영과 관련된
내용을 제재지침 제4조로부터 흡수하여 본 개정고시에 통합(제12조)

업무범위 규정 흡수 통합(제14조)

- 통관, 심사, 범칙조사 각 부서별 업무범위 관련 내용을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제재지침’) 제3조로부터 흡수하여 본
개정고시에 통합(제14조)

□ 시스템 명칭 수정(제2조제19호,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서 원산지표시단속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명칭을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으로 수정

□ 용어 수정(28·29·30·35조)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제28조)
 -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2조 ‘원산지 판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절 ‘원산지 판정’, 종전고시 제22조 ‘원산지 판정’은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의미하나, 본 개정고시 제12조의 위반유형별 ‘판정’ 예시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등 위반유형을 뜻하므로 혼선을 줄이고자 ‘유형’으로 용어 수정
- ‘조사의뢰’를 ‘범칙조사의뢰’로 수정(29조, 30조, 35조)
 - ※ 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검사’ ⇨ ‘조사’로 변경되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범칙조사, 조사의뢰⇨범칙조사의뢰 (관세법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범칙조사’ 용어를 인용)

□ 불명확한 예시 삭제(제4조)

-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하는 예시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예시 삭제(제4조제4항)
 - ※ 거래·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 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생략가능 ⇨ 예시 삭제

□ 원산지 국가명 표기 명확화(제7조)

- 널리 쓰이는 원산지국명 표기 예시 중에서 영국의 지역 명칭(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을 삭제(제7조제4호)
 - ※ 대외무역관리규정 76조⑥항5호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

□ 제도개선 반영하여 문구 추가 · 수정(26 · 32 · 50조, 별지16, 별지23)

- 원산지표시 조사직원 지정 · 변경할 때, 본청에 공문 보고하던 절차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개선(제26조제1항)
※ 원산지표시 검사직원 지정방식 변경(공정무역심사팀-2052, '22.9.14 관련)
-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예외 조치로 현지시정할 수 있는 물품에 방진, 방습, 냉동 등 특수보관 필요 물품 추가(제32조제4항제3호 신설)
※ 백신 등 초저온 특수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제도개선안 반영)
- 원산지표시 사전안내제도의 보고 절차를 시스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간소화(제50조제1항)
※ 세관장 대면보고 절차를 시스템 등록 방식으로 간소화(자체제도개선)
-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에 이의제기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의견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문구 추가(별지 16호)
※ 규제개혁과제 반영
-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에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부과 · 징수가 완료되므로 의견진술이 불가함을 추가안내(별지 23호)
※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 반영

□ 인용 법령 명칭 수정(제5조, 제42조, 별지4호 등)

- 「식품위생법」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 「민원사무처리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별지4, 별지6, 별지16, 별지19, 별지23, 별지24호, 별지27호, 별지34호)

□ 교육기관 변경사항 반영(제38조)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기관 변경사항 반영('24년이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 원산지표시위반자 명단 공표 규정 신설(제39조)

- 원산지표시 위반자명단 공표권한이 산업부에서 관세청으로 위탁되어, 훈령의 관련 규정을 고시로 흡수(훈령 28조의2 ⇒ 고시 39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⑥항1의3호, 위반금액 10억원 이상 과징금 대상자

□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율 확대(별표13)

- 시중유통물품 원산지표시 1차 위반 과징금 부과할 때, 현행 경감율(30%)을 중소기업에게는 법정 최대치인 50%까지 확대하여 자금 부담 완화(별표13)
※ ① [근거] 과징금경감사유에 '중소기업여부' 추가(대외무역법시행령 60조)
<종전> 위반정도 · 횟수 등 ⇒ 종전 + 중소기업여부
② [경감] 허위표시 · 손상 판매분 1차 위반에 대해 경감율 30% 적용
⇒ 중소기업에게는 시행령 60조 경감율의 법정최대치 50%까지 적용

□ 시정명령 · 과징금 의견제출기간 명확화(33조, 36조)

- 시정명령 의견제출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로 수정(33조⑧항)
- 과징금 의견제출기간을 '2주간'에서 '14일간'으로 수정(36조⑤항)
※ 「행정절차법」 21조③항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종전훈령 20조③항 시정명령은 '10일 이내', 종전고시 19조②항 과징금은 '2주간'으로 다름 ⇒ '14일'로 명확화

□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연장(제37조)

-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의견진술기간 보장(37조③항)
 -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23.12.22) 사항 반영

□ 폐지규정, 경과조치 안내(부칙)

- 훈령·지침의 내용을 개정고시에 흡수·통합하고 폐지
- 농수산가공품 표시크기 적용시점을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과 일치화
 -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표시크기와 적용시점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와 일치시킴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 제1조 ~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법 226조, 227조, 229조, 230조, 231조, 238조, 246조○ 관세법시행령 245조○ 대외무역법 33조~38조, 52조, 53조의2, 59조○ 대외무역법시행령 55조~67조○ 대외무역관리규정 73조~9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3조, 5조, 6조, 6조의2, 7조, 8조, 9조, 9조의2, 14조, 16조, 18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①항 2호, 5조④항, 6조, 7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 세부적인 조항별 위임근거는 '[붙임1]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와 같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4. . .

7.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당자 : 채정균사무관(042-481-7742), 추영주주무관(042-481-7897)
- 제출기한 : 2024. 00. 00.
- 제출방법 : (이메일) cuppy1@korea.kr, chunam606@korea.kr,
(팩스) 042-481-7791

불임1**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 제1조	○ 관세법 226조, 227조, 230조, 231조, 246조 ○ 대외무역법 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 제2조	○ 관세법 230조 ○ 관세법 시행령 245조 ○ 대외무역법 35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2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76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①항 2호
○ 제3조	○ 대외무역법 52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56조,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제4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76조
○ 제5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76조
○ 제6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80조, 85조, 86조
○ 제7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76조
○ 제8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82조
○ 제9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81조
○ 제10조	○ 관세법 51조, 57조, 63조, 65조, 67조의2
○ 제11조	○ 관세법 227조, 266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78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 제12조	○ 관세법 229조, 230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75조~82조
○ 제13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관세법 230조
○ 제14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 23조
○ 제15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제16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제17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제18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제19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제20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23조
○ 제21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제22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제23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33조, 33조의2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33조, 33조의2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12조 ○ 공무원여비규정 30조 ○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2조
○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230조 ○ 대외무역법 33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77조, 81조
○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230조
○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231조 ○ 대외무역법 38조
○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158조, 230조, 231조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20조~23조
○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238조 ○ 관세법시행령 245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장1절(107조~115조)
○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230조 ○ 대외무역법 33조의2 ○ 대외무역관리규정 83조, 76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9조
○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230조 ○ 대외무역법 33조의2 ○ 대외무역관리규정 83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9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33조, 53조의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6조, 9조, 14조
○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33조의2 ○ 대외무역법시행령 59조, 59조의2, 60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6조의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2
○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277조 ○ 대외무역법 59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 18조, 21조, 2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2조의2, 3조, 5조
○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9조, 9조의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10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3조, 4조
○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33조의2 ○ 대외무역법시행령 60조의2,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9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132조, 230조 ○ 행정심판법 3조
○ 제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시행령 62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84조
○ 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34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62조, 9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조
○ 제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시행령 57조, 63조
○ 제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1조
○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238조 ○ 관세법시행령 245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 제46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3조
○ 제47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3조
○ 제48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9조
○ 제49조	○ 관세법 233조의3 ○ 대외무역법시행령 92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3조의2
○ 제50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조
○ 제51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조
○ 제52조	○ 행정규제기본법 8조

불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

【조문】

개정전(종전고시)		각 부서별 업무범위개정후(개정고시)	
장 · 절 · 조	내용	장 · 조	내용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삭제> (삭제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산지표시 제도
제2장	원산지표시 제도	제3조	원산지표시 원칙
제1절	원산지표시	제4조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4조	원산지표시 원칙	제5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5조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6조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제6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7조	원산지 국가명 표기
제7조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제8조	원산지표시 면제
제8조	원산지 국가명 표기	제9조	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제9조	원산지표시 면제	제10조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제10조	물품별 원산지표시방법 지정	제11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제11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제12조	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및 처리	제3장	원산지표시 조사 등
제12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	제13조	조사의 관할
제13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제14조	업무범위
제14조	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제15조	조사대상
제15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처리	제16조	조사 대상 업체 선정
제16조	시정명령	제17조	조사계획 수립
제17조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제18조	조사계획 통지
제17조의2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제19조	조사 방법
제18조	조사의뢰	제20조	부서간 합동단속
제19조	과징금 부과	제21조	조사처리 기한
제19조의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 과태료	제22조	조사 시작
제19조의3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제23조	조사 수행
제20조	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	증거보전 조치 등
제20조의2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25조	조사 결과 보고 통지
제3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26조	조사 직원 지정 등
제21조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제27조	검사전문요원의 관리
제22조	원산지 판정	제4장	조사 후 조치 등
제23조	이의제기	제28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제24조	재검토 기한	제29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0조	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개정전(종전고시)		개정후(개정고시)	
장 · 절 · 조	내용	장 · 조	내용
		제31조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제32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33조	시정명령
		제34조	시정조치 등 결과 확인
		제35조	범칙조사 의뢰
		제36조	과징금 부과
		제37조	과태료 부과
		제38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제39조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등록 및 위반자 공표
		제40조	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5장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41조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제42조	원산지 판정
		제43조	원산지 사전확인 및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제6장	보칙		
		제44조	원산지국민감시단의 관리
		제45조	물품별 관리세관 지정
		제46조	특이사항 보고 등
		제47조	언론보도 등
		제48조	관계 기관 통지
		제49조	유관기관과 협력
		제50조	사전안내
		제51조	재검토 기한
		제52조	규제의 재검토

【서식】

개정전(종전고시)		개정후(개정고시)	
서식번호	내용	서식번호	내용
별표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별표1	수입세트물품
별표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별표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별표2의2	수입세트물품	별표3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별표3	의무이행 요구사항	별표4	의무이행 요구사항
별표4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 예시	별표5	원산지표시조사 표준요구자료 목록표
별표5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 예시	별표6	원산지표시 조사 직원 행동요령
별표6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	별표7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 예시
별표7	원산지 미표시 판정 예시	별표8	원산지 오인표시 유형 예시
별표8	원산지 손상·변경 판정 예시	별표9	원산지 부적정표시 유형 예시
별표9	조사의뢰 기준	별표10	원산지 미표시 유형 예시
별지1	이의신청서	별표11	원산지 손상·변경 유형 예시
별지1의2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표12	범칙조사의뢰 기준
별지1의3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표13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별지1의4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표14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별지2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별지1	일반 원산지증명서
별지3	원산지 판정 신청서	별지2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서
별지4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별지3	원산지표시 조사 계획서
별지5	보수작업승인(신청)서	별지4	원산지표시 조사 안내문
별지6	환적물품 유치/수정명령서	별지5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
별지7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별지6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
별지8	의견진술 포기서	별지7	원산지표시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9	과징금 부과 통지서	별지8	원산지표시 조사결과 통지서
별지10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별지9	원산지표시 정보분석 보고서
별지11	삭제	별지10	출장결과 보고서
별지12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서	별지11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별지13	일반 원산지증명서	별지12	보수작업승인(신청)서
		별지13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별지14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
		별지15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
		별지16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유통물품용)
		별지17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
		별지18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별지19	과징금 부과예정 옹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별지20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포기서
		별지21	과징금 부과 통지서
		별지22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

개정전(종전고시)		개정후(개정고시)	
서식번호	내용	서식번호	내용
		별지23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
		별지24	과태료 부과 통지서
		별지2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26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서
		별지27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명령서
		별지28	이의신청서
		별지29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별지30	원산지 판정 신청서
		별지31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32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33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및 위촉장 양식
		별지34	원산지표시제도 사전안내문
		별지35	사전안내 확인서
		별지36	사전안내 결과보고서

불임3

행정규칙 통합 현황표

【고시 조문】

종전고시(조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삭제> (삭제전 : 다른 별률과의 관계)
제2장	원산지표시 제도
제1절	원산지표시
제4조	원산지표시 원칙
제5조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6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7조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제8조	원산지 국가명 표기
제9조	원산지표시 면제
제10조	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제11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및 처리
제12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
제13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제14조	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제15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처리
제16조	시정명령
제17조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제17조의2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제18조	조사의뢰
제19조	과징금 부과
제19조의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과태료
제19조의3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제20조	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의2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3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21조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제22조	원산지 판정
제23조	이의제기
제24조	재검토 기한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종전훈령(조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각 부서별 업무범위
제4조	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제5조	부서간 합동단속
제6조	<삭 제>
제7조	제재조치
제8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된 물품의 처리
제9조	과징금 부과
제10조	수입 농수산물등 원산지표시 검사 등
제11조	과태료 부과
제12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제13조	준용 규정
제14조	재검토 기한
제2장	원산지표시 원칙
제15조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16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17조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제18조	원산지 국가명 표기
제19조	원산지표시 면제
제20조	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제21조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제22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제3장	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제23조	원산지표시 조사 등
제24조	조사의 관할
제25조	업무 범위
제26조	조사 대상
제27조	조사 대상 업체 선정
제28조	조사 계획 수립
제29조	조사 계획 통지
제30조	조사 방법
제31조	부서간 합동단속
제32조	조사 처리 기한
제33조	조사 시작
제34조	조사 수행
제35조	증거보전 조치 등
제36조	조사 결과 보고 통지
제37조	조사직원 지정 등
제38조	검사전문요원의 관리
제4장	조사 후 조치 등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및 처리
제39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제40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제41조	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제42조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제43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44조	시정명령
제45조	시정조치 등 결과 확인
제46조	법칙조사 의뢰
제47조	과징금 부과
제48조	과태료 부과
제49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제재지침(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각 부서별 업무범위
제4조	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제5조	부서간 합동단속
제6조	<삭 제>
제7조	제재조치
제8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된 물품의 처리
제9조	과징금 부과
제10조	수입 농수산물등 원산지표시 검사 등
제11조	과태료 부과
제12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제13조	준용 규정
제14조	재검토 기한

개정고시(조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원산지표시 제도
제1절	원산지표시
제3조	원산지표시 원칙
제4조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5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6조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제7조	원산지 국가명 표기
제8조	원산지표시 면제
제9조	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제10조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제11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제12조	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제3장	원산지표시 조사 등
제13조	조사의 관할
제14조	업무 범위
제15조	조사 대상
제16조	조사 대상 업체 선정
제17조	조사 계획 수립
제18조	조사 계획 통지
제19조	조사 방법
제20조	부서간 합동단속
제21조	조사 처리 기한
제22조	조사 시작
제23조	조사 수행
제24조	증거보전 조치 등
제25조	조사 결과 보고 통지
제26조	조사직원 지정 등
제27조	검사전문요원의 관리
제4장	조사 후 조치 등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및 처리
제28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제29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제30조	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제31조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제32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33조	시정명령
제34조	시정조치 등 결과 확인
제35조	법칙조사 의뢰
제36조	과징금 부과
제37조	과태료 부과
제38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종전고시(조문)	종전훈령(조문)	제재지침(조문)	개정고시(조문)
			제39조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등록 및 위반자 공표
			제40조 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5장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41조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제42조 원산지 판정
			제43조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제6장 보칙
			제44조 원산지국민감시단의 관리
			제45조 물품별 관리세관 지정
			제46조 특이사항 보고 등
			제47조 언론보도 등
			제48조 관계 기관 통지
			제49조 유관기관과 협력
			제50조 사전안내
			제51조 재검토 기한
			제52조 규제의 재검토

【고시 서식】

종전고시(별표,별지)	
별표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별표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별표2의2	수입세트물품
별표3	의무이행 요구사항
별표4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 예시
별표5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 예시
별표6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
별표7	원산지 미표시 판정 예시
별표8	원산지 손상·변경 판정 예시
별표9	조사의뢰 기준
별지1	이의신청서
별지1의2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1의3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1의4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2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별지3	원산지 판정 신청서
별지4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별지5	보수작업승인(신청)서
별지6	환적물품 유치/수정명령서
별지7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별지8	의견진술 포기서
별지9	과징금 부과 통지서
별지10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별지11	삭제
별지12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서
별지13	일반 원산지증명서 양식

종전훈령(별표,서식)	
별표1	원산지표시 검사 지원 행동 요령
별표2	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1	원산지 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
서식2	원산지 표시 검사 계획서
서식3	원산지 표시 검사 안내문
서식4	원산지 표시 검사 확인서
서식5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
서식6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보고서
서식7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통지서
서식8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
서식9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서식10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서식11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
서식12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서식13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
서식14	과징금 부과 통지서
서식15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
서식16	과태료 부과통지서
서식17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18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서
서식19	출장 결과 보고서
서식20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및 위촉장 양식
서식21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
서식22	사전안내 확인서
서식23	사전안내 결과보고서
서식24	원산지표시 제도 교육 이수 명령서

제재지침(별표,별지)	
별표1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
별표2	수입 농수산물등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기준
별표3	수입 농수산물등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준
별지1	원산지 표시 검사 확인서
별지2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별지3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별지4	의견진술 포기서
별지5	과징금 부과 통지서
별지6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별지7	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8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9	원산지표시 제도 교육 이수 명령서

개정고시(별표,별지)	
별표1	수입세트물품
별표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별표3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별표4	의무이행 요구사항
별표5	원산지표시 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별표6	원산지표시 조사직원 행동요령
별표7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 예시
별표8	원산지 오인표시 유형 예시
별표9	원산지 부적정표시 유형 예시
별표10	원산지 미표시 유형 예시
별표11	원산지 손상·변경 유형 예시
별표12	범칙조사의뢰 기준
별표13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14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별지1	일반 원산지증명서
별지2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서
별지3	원산지표시 조사 계획서
별지4	원산지표시 조사 안내문
별지5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
별지6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
별지7	원산지표시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8	원산지표시 조사결과 통지서
별지9	원산지표시 정보분석 보고서
별지10	출장 결과 보고서
별지11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별지12	보수작업승인(신청)서
별지13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별지14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
별지15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
별지16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유통물품용)
별지17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
별지18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별지19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별지20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포기서
별지21	과징금 부과 통지서
별지22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별지23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

종전고시(별표,별지)	종전훈령(별표,서식)	제재지침(별표,별지)	개정고시(별표,별지)
			별지24 과태료 부과 통지서
			별지2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26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서
			별지27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명령서
			별지28 이의신청서
			별지29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별지30 원산지 판정 신청서
			별지31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32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33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및 위촉장
			별지34 원산지표시제도 사전안내문
			별지35 사전안내 확인서
			별지36 사전안내 결과보고서